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847 호 2013. 10. 11(금)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7호[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8호[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9호[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16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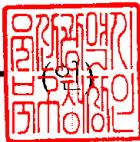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67호[공유수면점 · 사용 허가사항 고시] 22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충호


2013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6.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2013.03.23시행)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 나. 국가정보화계획 및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
- 다.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09.10월)에 따라 우리 구의 여건·상황에 맞게 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윤 층 오
（인）
남구청장인

2013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중”을 “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 중”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제1호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

(이하 “-”라 한다)로, 제5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운영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부서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정보화부서의 장”을 “운영부서장”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비밀번호관리)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의”를 “「전자 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운영하며”를 “운영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2011.09.30.시행)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최적의 인터넷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제2조)
- 나.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담당부서 지정(제3조)
- 다.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안전대책 마련(제8조, 제9조, 제9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충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3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 주민센터에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사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상담 및 연계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자원봉사 등 협력
5.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4.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신체·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복지위원회를 표시하는 복지위원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복지위원회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발급한 복지위원회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규격 · 제식 및 기재사항(제12조제1항 관련)

54mm

복지위원회 (연한 초록색 바탕)
사진
(성명)
울산광역시 북구

NO.

소 속 : 북구 동

직 위 : 동 복지위원

성 명 :

생년월일 :

20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

※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이 증을 슬독하신 분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복지지원과(241-7631~6)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86mm

[별지 제1호서식]

○○동 복지위원회 발급신청서

(□신 규, □재발급)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우편번호 : □□□ - □□□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소속		위촉기간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 복지위원회 발급(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증명사진 2장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복지위원회 발급대장(제12조제2항 관련)

발급 번호	발급 연월일	소속 동명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위촉 기간	회수 여부	발급 사유	사진	결재란		
									담당자	담당	과장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2조~제3조)
 -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위원회 설치
- 나.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내, 지역구의원 당연직
 - 동장 추천, 구청장 위촉
-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 사항(제5조~제8조)
 -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위원은 임무 수행시 대상자 인격 존중, 비밀누설 금지
- 라. 회의개최,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제9조~제13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회 개최
 -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충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13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739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

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흐선(互選)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관심 있는 주민들의 협동조합 이해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은 주민설명회 및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 견학활동 등이 포함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 및 협동조합 설립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 참여)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사항
2. 연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활동 사항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제1조~제3조)
- 나.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 운영
(제4조~제7조)
- 다.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등(제8조~제10조)
- 라.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등 참여, 홍보 등(제11조~제14조)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3 - 16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주 소 성 명	점용장소	면적 (m ²)	허가기간 (협의·승인)	점용목적	비 고
2013. 10.02. - 28	201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북구청) 북구청장 (문화체육과)	북구 산하동 367-16일원 지선	62	영구	미다행정봉사실 야외데크 설치	조건부 허가